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9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이병진·정동영·민병덕

서미화 · 임호선 · 이상식

김영배 · 송옥주 · 윤준병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 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 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
	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
	용자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6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u>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
	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
	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